

전자증권 시행에 따른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공고
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[‘19. 9. 16(월)]에 따라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
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
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- ◇ 전자증권 시행일[‘19. 9. 16(월)]부터 소유 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- ◇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[‘19. 9. 11(수)] 까지 발행인(명의개서대행회사)에게 전자등록되는
전자등록계좌(증권사계좌)를 통지하고 실물증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◇발행인은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[‘19. 9. 11(수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
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2019-07-05

주식회사 원 림 대표이사 신 성 업
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증권대행부